

# 漁港消息

발행경 孫井植  
편집인 金在克  
인쇄인

韓國漁港協會  
서울특별시강남구역삼동705-9

TEL. 568-6651~3  
FAX. 568-6653

月刊: 비매품

등록번호: 라3459

등록일: 1988년 2월 19일

會訓

● ● ●

創 奉 誠  
意 仕 責

漁港은  
우리 漁民의  
永遠한  
어머니 품

## '94년 漁港건설豫算

# 6百40億4千4百萬원확정 올해보다 12.6% 增額

## 改正 어항법 施行令 통과 未備點 현실에 맞게 補完

개정 어항법 시행령의  
지안 12월 16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했다.  
정부는 개정 어항법에  
서 시행령(이하 시행령)  
을 공포하고 시행령에  
한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개정 어항법 시행령의  
시행령은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바다수산부령 제 122호  
로 공포되었다.

## 補修 補强 지원 등 强化 研究 開發費 신규 計上

국립수산과학원(이하 수과학원)은 어항건설예산의  
정액인 6백40억4천4  
4백만원(이하 644.44  
4백만원)을 확정했다.  
제1차 65%인 418.89  
2백만원(이하 418.89  
2백만원)을 12월 27  
일(수)부터 1월 27일(수)  
까지 지급한다.

정말 숨가쁘게 달려온 지난  
한 해였다. 건국이후 최초의  
국립수산과학원(이하 수과학원)  
이외 발발된 수산사업의  
시행령의 새로운 장의 활짝  
열리면서 깨끗한 바다 가꾸기  
작사가의 추진 등 이른바  
신수산 정책의 활달한 추진된  
그런 한 해였다.  
그러나 국제적인 곳곳의  
북반구 열풍이 세계경제의  
거센 도전에 직면한 시련을

## 漁港界의 오랜 念願 改正 漁港法 마무리

경우에만 했던 해이기도 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우리  
과외인(이하 과외인)의 과외인  
정도의 중수추진사업의 개강  
정도를 수 있을 것 같다.  
한해 말에서 동서양전시대  
왕조의 중추를 고한 지금, 세  
계에서의 어항(이하 어항)의 적자  
생존시대가 도래했음을 실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 어  
항(이하 어항)의 단계를 마련하고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  
한 어항(이하 어항)의 단계를 마련하고

### 격변과 충격의 한해... '93어항을 돌아보다

어항(이하 어항)의 단계를 마련하고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  
한 어항(이하 어항)의 단계를 마련하고

'94년도 어항건설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94예산(A)	93예산(B)	증감(A-B)	%
합계	64,044	56,863	7,181	12.6
어항건설	63,459	56,641	6,818	12
1. 어항건설	57,042	50,530	6,512	12.9
2. 어항관리	47,979	42,406	5,573	13.1
3. 어항연구	9,063	8,124	939	11.6
4. 어항보양	6,417	6,111	306	5
5. 어항연구개발	289	91	198	218
6. 어항연구개발	89	91	2	2
7. 어항연구개발	200	91	109	12
8. 어항연구개발	296	131	165	126

## 어항시설 8개소 호혜관리 정언도 등 종합검토

수산청(이하 수청)은 어항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  
하여 8개소 어항(이하 어항)  
소재를 매몰(이하 매몰) 등  
어항(이하 어항)의 호혜관리  
정언도(이하 정언도) 등 8개  
소재를 매몰(이하 매몰) 등  
어항(이하 어항)의 호혜관리  
정언도(이하 정언도) 등 8개  
소재를 매몰(이하 매몰) 등

## 協會 창립 6年만의 快事 감액된 漁港 예산을 挽回 用役費의 예산反映성취

고 어민과 어항인, 정부와의  
사이에서 어항(이하 어항)을 위한 적  
절한 상담과 중재, 자원 및 건  
의를 하고 전차(이하 전차)의 이  
기까지 수많은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특히 법정법인 출범이후인  
하여 법정법인(이하 법정법인)  
의 역할(이하 역할)이 이제 협회  
다 이상(이하 이상) 체제의 성격  
이 되어(이하 되어) 안(이하 안)다  
을 운영(이하 운영)하고 있다.가  
부리고(이하 부리고) 협회(이하 협회)의

## 정자항 등 9곳 사업비 배정

수산청(이하 수청)은 어항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해 계속(이하 계속)  
자(이하 자)인 17개항(이하 17개항)에  
예산(이하 예산)을 배정(이하 배정)  
어(이하 어)민(이하 어)민(이하 어)민

## 지역受注한도 높여 豫定價 50억원미만으로

정부는 지방  
중소기업  
지원(이하 지원)을  
강화(이하 강화)하기  
위해(이하 위해)  
지역(이하 지역)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  
지원(이하 지원)을  
강화(이하 강화)하기  
위해(이하 위해)  
지역(이하 지역)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  
지원(이하 지원)을  
강화(이하 강화)하기  
위해(이하 위해)

적(이하 적)포(이하 적)미(이하 미)지(이하 지)부(이하 부)양(이하 양)에  
개(이하 개)항(이하 항)의(이하 의)요(이하 요)구(이하 구)를(이하 를)  
반(이하 반)영(이하 영)하(이하 하)고(이하 고)  
또(이하 또)서(이하 서)민(이하 민)중(이하 중)소(이하 소)기업(이하 기업)의(이하 의)  
지(이하 지)원(이하 원)을(이하 를)강(이하 강)화(이하 화)하(이하 하)고(이하 고)  
향(이하 향)후(이하 후)8(이하 8)개(이하 개)항(이하 항)의(이하 의)대(이하 대)해(이하 해)  
는(이하 는)정(이하 정)비(이하 비)조(이하 조)사를(이하 를)실(이하 실)시(이하 시)하(이하 하)고(이하 고)  
향(이하 향)후(이하 후)정(이하 정)비(이하 비)조(이하 조)사를(이하 를)실(이하 실)시(이하 시)하(이하 하)고(이하 고)

# 施行令 전문

현행	개정안
(신설)	제12조(주민등의 의견청취) ①관리청이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들으자 할 때에는 당해 어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의견청취의 목적 2. 당해 어항시설계획의 개요 3.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는 지역주민·이해관계인 및 당해 어항소재지에 있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들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의견서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 및 직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제출된 의견내용
(신설)	제13조(주민등의 의견청취생략) 법 제8조제1항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설구역의 일부변경 2. 지형사정 또는 어항여건의 변경으로 인한 어항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3. 기본시설구조물의 단면변경 4. 어항시설의 유지·보수
(신설)	제14조(시설계획등의 협의) ①법 제11조제1항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제 13조각호의 사항에서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시·도지사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청장과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0일을 말한다.
(신설)	제15조(시설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고시) 관리청은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를 하고자 할 경우 당해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항의 명칭·종류·위치 및 구역 2. 어항시설계획의 주요내용 또는 주요변경내용 3. 기타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제16조(비관리청의 어항시설사업허가등) ①법 제12조제2항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어항시설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2조제2항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어항시설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함은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허가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관리청이 인정할 때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그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제17조(귀속대상외의 어항시설) 법 제12조제3항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항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목조식 부잔교, 하역기계, 급유·급수를 위한 보급시설(강철제 저장탱크에 한한다) 2. 여객승강용 시설 3. 얼음공급을 위한 송빙고 및 쇄빙탑시설 4. 기타 관리청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
(신설)	제18조(어항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예치) ①관리청은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관리청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비용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1. 어항시설사업과 관련하여 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예상되는 보상비용 2. 어항시설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어항시설의 이전 또는 철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예상되는 이전 또는 철거비용 3. 제2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순공사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비용, 다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산업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어촌계(이하 "어촌계"라 한다)와 정부 투자기관이 어항시설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에 한한다)과 그 예치방법 및 예치기간은 관리청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제19조(사업계획의 변경 및 폐지명령)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2. 법 제19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제20조(사업대행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건설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설업 및 전문건설업과 골재채취업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바다골재에 한한다)을 말한다.
(신설)	제21조(공공단체의 종류)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을 이용하는 등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단체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 2.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 3.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항협회(이하 "어항협회"라 한다) 4. 어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어선협회 5. 한국어업기술훈련소법에 의한 한국어업기술훈련소 6. 기타 수산관계 비영리법인
(신설)	제22조(어항시설의 보수등의 범위)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의 보수 및 관리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는 어항시설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완전한 보수 및 관리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총액을 말한다.

현행	개정안
제10조(목적) 이 영은 어항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제1조(목적) 이 영은 어항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입도로 및 주민편익시설의 범위) ①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진입도로"라 함은 어항구역에 인접한 기준 도로로부터 어항구역까지의 도로구간을 말한다. ②법 제2조제3호라목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민편익 시설"이라 함은 여객선·생활필수품운반선등 선박의 계류시설과 대합실등 여객의 편의시설을 말한다. 제3조(어항정책심의회의 구성)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청장소속하여 두는 어항정책심의회의(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수산청장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②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③심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수산청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17조(심의회의 설치)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어항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수산청에 중앙어항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도(이하 "도"라 한다)에 지방어항심의회(이하 "지방심의회"라 한다)를 두되, 총청복도는 제외한다. 제19조(심의회의 조직)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과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 ②중앙심의회는 위원장은 수산청 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수산청 시설국장이 된다. ③지방심의회 위원장은 부지사(부시장을 포함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어항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이 된다. ④중앙심의회 위원장은 건설부장관, 교통부장관이 추천하는 각 1인과 어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수산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지방심의회 위원장은 도지사가 어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4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어항의 지정·변경 및 해제 2. 어항수축사업에 관한 시설계획 및 그 사업 계획 3. 제2조의 사용허가 또는 법 제23조의 임대제에 관한 사항 4. 어항시설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 5. 법 제12조의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6. 기타 어항의 유지·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제20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21조(심의회의 의사) 심의회 의사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간사 및 서기) ①심의회에 간사 1인 및 서기 1인을 둔다. 2. 간사는 어항업무를 관장하는 과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23조(수당과 여비) 심의회에 출석한 수산청 또는 도 소속 공무원 이외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21조(심의회의 의사) 심의회 의사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간사 및 서기) ①심의회에 간사 1인 및 서기 1인을 둔다. 2. 간사는 어항업무를 관장하는 과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23조(수당과 여비) 심의회에 출석한 수산청 또는 도 소속 공무원 이외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어항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2. 어항시설계획의 수립 및 변경(어항시설계획의 변경의 경우로서 제13조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3.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수산청장이 어항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심의회 회의의 의장을 맡고,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심의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수당)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제2조(어항의 지정기준) ①수산청장이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산지원의 개발, 관련산업의 계열화, 지역사회의 개발, 어획물의 유통 기타 자연적 조건을 고려하여 어항의 종류별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서해안에 있어서는 그 기준의 7할이상이면 어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1종어항 : 그 지방의 어선수가 80척이상이고 다른 지방의 어선의 이용이 년 100척이상으로서 그 어획고가 년간 1,000톤이상일 것. 2. 제2종어항 : 그 지방의 어선수가 20척이상 80척 미만이고 다른 지방의 어선의 이용이 년 30척이상 100척 미만으로서 그 어획고가 년간 100톤 이상일 것. 3. 제3종어항 : 어업지원기지, 어항의 개발 또는 어선의 긴급 대피에 필요한 곳 ②수산청장은 수산지원의 개발, 관련산업의 계열화, 지역사회 개발 또는 어획물의 유통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항 각호의 기준에 불구하고 어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어항지정등의 고시) 수산청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관리청"이라 한다)가 법 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를 하고자 할 경우 당해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항의 명칭·종류·위치 및 구역 2. 기타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어항의 기본조사)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항시설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어항시설의 현황 2. 어항의 이용 및 어업의 현황 3. 조위·설계파고등 자연적 조건 4. 인접지역의 관련산업의 개발현황 5. 기타 어항시설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어항시설계획의 내용) 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시설구역·기능시설구역 및 복지시설구역(이하 "시설구역"이라 한다)의 구분 2. 기본시설의 종류 및 규모 3. 기본시설의 배치계획 4. 기본시설별 표준단면 5. 기본시설의 투자계획 및 효과 ②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계획의 필요성 2. 정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의 종류 및 규모 3. 정비를 필요로 하는 기본시설의 배치계획 4. 정비를 위한 시설의 설치·폐합 및 이전등에 관한 기준과 표준단면 5. 정비를 필요로 하는 기본시설의 투자계획 및 효과 (삭제)
제20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21조(심의회의 의사) 심의회 의사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간사 및 서기) ①심의회에 간사 1인 및 서기 1인을 둔다. 2. 간사는 어항업무를 관장하는 과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23조(수당과 여비) 심의회에 출석한 수산청 또는 도 소속 공무원 이외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어항지정등의 고시) 수산청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관리청"이라 한다)가 법 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를 하고자 할 경우 당해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항의 명칭·종류·위치 및 구역 2. 기타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어항의 기본조사)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항시설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어항시설의 현황 2. 어항의 이용 및 어업의 현황 3. 조위·설계파고등 자연적 조건 4. 인접지역의 관련산업의 개발현황 5. 기타 어항시설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어항시설계획의 내용) 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시설구역·기능시설구역 및 복지시설구역(이하 "시설구역"이라 한다)의 구분 2. 기본시설의 종류 및 규모 3. 기본시설의 배치계획 4. 기본시설별 표준단면 5. 기본시설의 투자계획 및 효과 ②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계획의 필요성 2. 정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의 종류 및 규모 3. 정비를 필요로 하는 기본시설의 배치계획 4. 정비를 위한 시설의 설치·폐합 및 이전등에 관한 기준과 표준단면 5. 정비를 필요로 하는 기본시설의 투자계획 및 효과 (삭제)

# 改正漁港法

현행	개정안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관리청이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 이외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항시설을 사용하고자 하거나, 수산업협동조합이 그 사업목적으로 어항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p> <p>④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항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수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⑤어항시설의 사용허가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수산청이 정한다.</p> <p>제14조(어항시설의 사용료)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 및 제3종어항의 어항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당해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절감되는 시간과 운반비·수송비 또는 하역비등에 관하여 통상 받는 수익금액의 범위내에서 수산청장이 정한다.</p> <p>②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인근 지역의 임대료, 임대등급을 참작하여 관리청이 정한다.</p> <p>(신설)</p>	<p>(삭제)</p> <p>제27조(어항시설의 공익목적의 사용 또는 점용범위) 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li> <li>2. 어민의 공동이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li> <li>3. 기타 관리청이 주민의 공동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li> </ol> <p>제28조(사용료등의 감면) ①법 제30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어항시설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면제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li> <li>2.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가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li> <li>3. 군사상의 필요로 사용하는 경우</li> <li>4. 제21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가 그 설립목적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li> <li>5.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어항시설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li> </ol> <p>②법 제30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어항시설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어항구역안에서 수산물의 하역작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li> <li>2. 법 제2조제3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민편익시설로서 낙도의 보조항로를 운행하는 여객선의 여객편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li> <li>3.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사용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국가에 귀속된 토지 또는 어항시설의 조성 또는 설치에 소요된 총사업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li> <li>4. 폐유·폐선의 처리를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li> </ol> <p>(삭제)</p>
<p>제3조(금지행위)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항을 유지·관리하는 수산청장 또는 도지사(이하 "관리청"이라 한다)는 어항구역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어항시설을 손괴하거나 손괴할 우려가 있는 행위</li> <li>2. 유독물 또는 동물의 시체를 버리는 행위</li> <li>3. 다량의 토석등을 버리거나 기타 어항의 심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li> <li>4. 토석등을 채취하거나 식물을 재배 또는 채취하는 행위</li> <li>5. 현저하게 수질을 오염하게 하거나 국민보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li> </ol> <p>제4조(장해물의 제거등) 관리청은 어항의 구역내에서 어선의 항행을 방해하거나, 항행에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류물, 침몰물 기타 물건을 설치 또는 투척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제거나 제거를 명할 수 있으며, 죽목·어구 기타 물건을 장기간 적치하는 행위등 어항시설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p> <p>제5조(어선교통의 제한) ①관리청은 어선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어항의 구역내에서 항로 또는 구역을 지정하여 어선의 통행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p> <p>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항로 또는 구역과 제한 또는 금지하는 기간은 관리청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p> <p>제6조(어항시설의 처분금지) 국유 또는 공유의 어항시설은 이를 양도하거나 이에 시권(임대를 제외한다)을 설정할 수 없다.</p> <p>(신설)</p>	<p>(삭제)</p> <p>제29조(관리·의무의 이전신고)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의무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권리 또는 의무가 상속에 의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리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p> <p>제30조(권한의 위임) ①수산청장은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가 그 권한을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할 어항사무소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에 관한 허가·신고 및 협의</li> <li>2.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 또는 점용허가의 취소 및 사용 또는 점용의 정지명령</li> <li>3.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징수</li> <li>4.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 또는 제거를 위한 명령과 원상회복 또는 제거등을 위한 필요한 조치</li> <li>5.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 또는 신고의 수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에 관한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li> </ol> <p>②수산청장은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어항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단체로 하여금 어항시설의 보수 및 관리를 하게 하는 업무</li> <li>2.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공사의 시행자 또는 어항시설을 손괴시키는 자등으로 하여금 어항시설사업을 시행하게 하는 업무</li> </ol> <p>(신설)</p>
<p>제24조(권한의 위임) 다음 각호에 관계하는 수산청장의 권한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위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제2종어항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li> <li>2.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어항의 조사에 관한 사항</li> <li>3.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제2종어항의 어항 수축사업자의 사업계획서의 승인에 관한 권한 중 도 이외의 지방자치단체나 법 제2조제2항제1호(가)의 항로시설, 동항 제2호(가)의 수송시설, (나)의 항행보조시설, (사)의 어업용 통신시설을 포함하지 아니한 사업계획서 승인권 및 당해사업에 관한 법 제18조의 준공 검사권</li> <li>4. 전항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승인권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의 승인 취소권</li> </ol>	<p>(신설)</p> <p>제7조(어항시설의 사용허가) ①관리청은 어항시설의 일부를 일정한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어항시설의 설치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p> <p>②전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목적</li> <li>2. 시설물의 표시</li> <li>3. 시설물의 위치</li> <li>4. 사용기간</li> </ol>

현행	개정안
<p>제11조(보조율)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항 수축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보조율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2조제2항제1호의 (가) (나) 및 동항제2호의(사)의 시설에 관한 어항수축사업에 대하여는 그 소요사업비의 전액·다만, 도지사가 제2종어항에 대한 어항수축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8할 이내의 금액</li> <li>2. 전항의 보조금의 교부신청 절차 그 지급방법 및 피보조자에 대한 감독등에 관하여는 수산청장령 보조금 관리규칙을 준용한다.</li> </ol> <p>(신설)</p>	<p>제22조(청문절차) ①법 제18조제3항(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행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예정일의 10일전까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청문의 사유·일시 및 장소등을 통지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진술한 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p> <p>(삭제)</p>
<p>제13조(토지·수면등의 사용료)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어항수축사업자가 토지수면등의 소유자 또는 그 관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p> <p>②전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수산청장이 결정한다.</p> <p>제15조(손실보상액의 결정) ①법 제16조제2항 및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 또는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 그 손실보상액은 어항수축사업자 또는 관리인이 그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 수용 또는 결정한다. 다만, 법 제25조의 경우에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 또는 사용하는 때에는 법의 보상 절차에 따른다.</p> <p>②전항 본문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수산청장이 정한다.</p> <p>(신설)</p>	<p>제23조(재결의 신청) ①법 제23조제3항(법 제1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신청이 수산청장의 처분이나 수산청장이 시행하는 어항시설사업으로 인한 경우에는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에, 그 외의 경우에는 지방토지 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25조(귀속어항시설의 무상사용등) ①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관리청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또는 어항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관리청이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기간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총사업비중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관리청이 소유권을 취득한 잔여토지의 가액을 뺀 금액을 당해 어항시설을 유상으로 사용할 경우의 연간사용료로 나눈 수치의 8할로 한다.</p> <p>제26조(총사업비 및 잔여토지가액의 산정방법) ①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는 당해 어항공사의 준공검사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어항시설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조사비: 어항시설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기타 어항의 설계에 관한 조사비로서 순공사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을 말하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한다.</li> <li>2. 설계비: 어항시설사업의 시행을 위한 설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한다.</li> <li>3. 순공사비: 어항시설사업의 시행을 위한 재료비·노무비 기타 직접공사에 소요되는 경비(공사중 필요한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으로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기준과 정부표준 품셈 및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에 의한다.</li> <li>4. 보상비: 어항시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급된 토지매입비(건물·입목등의 매입비를 포함한다), 이주대책비, 어항구역안의 시설을 이전할 경우 그 이전비 및 영업권·어업권·광업권등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를 말한다.</li> <li>5. 부대비: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에 의한 일반관리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일반관리비·환경영향평가비·시공감리비등 어항시설사업의 시행 허가조건의 이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li> <li>6. 건설이자: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에 대한 이자(이자율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중 관리청이 지정하는 대출금리로 한다)을 말한다.</li> </ol> <p>②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이 취득하는 잔여토지가액의 산정은 잔여토지 취득당시의 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p> <p>(삭제)</p>

